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제출년월일 : 2005. 3.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인감증명법시행령(2002. 12. 31)
- 식품위생법(2000. 1. 12)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및 같은법시행령개정(2004. 7. 29)

2. 주요골자

- 가. 2005. 1. 1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자치법규도 이에 따르도록 권장
⇒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
- 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내용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
- 조문내용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 (안 제7조제3항)
 - 수수료 감액대상 변경 (안 제7조제3항제1호)
- 다.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삭제)된 내용 조정
- (별표1)중 “1. 인감에 관한 증명”
 - (별표3)중 “1.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입법예고(2. 1 ~ 2.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 한다.

“단,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1)중 1.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한다

(별표3)중 1.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징수방법)①~③ (생략) <u><신설></u>	제5조(징수방법)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u><단서신설></u>	③ -----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단,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1. -----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별표 1), (별표 3)

현행	개정안
(별표1) 1.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증명(증명청) 1통 500 인감증명(비증명청) 1통 800 인감의 변경신고 1건 500 (이하생략)	(별표1) 1. (삭제) (이하현행과 같음)
(별표3) 1.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 (이하생략)	(별표3) 1. (삭제) (이하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1. 【안 제3조 별표1 관련】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수수료)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500원

2. 【안 제3조 별표3 관련】

□ 식품위생법 제23조 삭제 <2000.1.12>

3. 【안 제5조제4항 관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⑦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안 제7조제3항 관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공공복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안 제7조제3항 제1호 관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